

초기 재일유학생의 주권인식(1905-1910)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홍학보』를 중심으로

왕신(王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수료, 한국사학 전공

wangchen92@naver.com

- I. 머리말
 - II. 『태극학보』 및 대내적 주권 인식
 - III. 『대한학회월보』 및 대외적 주권 인식
 - IV. 『대한유학생회학보』 및 국제법적 주권 인식
 - V. 『대한홍학보』 및 서양 주권론 인식
 - VI. 맺음말
-

I. 머리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차 개헌 전인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반포하였으나 주권이란 용어가 없었다. 1919년 9월에 이르러서야 주권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헌법 문서에 등장한 것이다.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1차 개헌에서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하였다. 임정헌법(1919. 9.11)에 따라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第5條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함, 第6條 大韓民國의 主權行使는 憲法 範圍內에서 臨時大統領에게 委任함”¹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이란 용어가 헌법에 명시된 획기적인 일이다.

주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유럽에서 일정한 역사적 연관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제도 또는 질서에 관한 문제이다. 달리 표현하면 주권 개념의 역사적 형성 문제는 근대 국가와 근대 국제질서 형성과 관련된 정치 투쟁 및 그에 수반된 이론적 논쟁의 문제이다.² 주권 개념에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로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및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를 꼽을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서양 학자들이 주권 개념을 거론하며 주권 개념을 공식적으로 다룬 국제법인 『만국공법』³

1 延世大現代韓國學研究所, 『(梨花莊 所藏) 粵南 李承晚文書(東文篇6: 大韓民國臨時政府關聯文書1)』(中央日報社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46-56쪽.

2 박상섭, 『국가·주권』(소화, 2008), 184쪽.

3 “1864년에 서양의 국제법이 온전한 형태로 다시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이번의 번역자는 마틴(William Martin, 1827-1916)이며 그는 미국 선교사였다. 마틴은 미국 법학자인 휘턴(Henry Wheaton, 1785-1848)의 『국제법 개요 (Elements of International

이 발간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나라와 조선은 주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주권 개념과 관련하여 1864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A. P. Martin, 丁韪良, 1827-1916)에 의하여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이 한역되었다. 『만국공법』에서는 주권이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대내적 주권은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이 있으며 내공법(內公法)이나 국법에 의해 규정된다. 대외적 주권은 본국의 자주성으로 가질 수 있으며 외교법(外公法)이나 공법에 의해 규정된다.⁴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주권은 가장 주요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는 뜻이다.⁵ 즉 주권의 개념에 대내적, 대외적 의미가 담겨있다.

초기 재일유학생들은 유학을 통해 서양의 지식과 일본의 사상을 접촉하였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10년 일제강점까지 대한제국의 외교권 등이 상실됨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 와중에 재일유학생은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른 조선의 위치와 대응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일유학생이 근대 서양 질서의 주권인식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그리고 일제시기 한반도의 주권 지식인 계층은 일본 유학생 출신들이었다. 한반도 주권 개념의 정착에 그들의 주권 인식이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law)』를 한역했다. 휘턴의 책은 당대 국제법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권희영, 『번역과 동아시아의 근대』(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95쪽.

4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韓國近代法制史料叢書-第1卷 萬國公法』(亞世亞文化社, 1981), 92쪽. “治國之上權, 謂之主權, 此上權, 或行於內, 或行於外, 行於內, 則依各國之法定, 或寓於民, 或歸於君, 論此者, 嘗名之為內公法, 但不如稱之為國法也, 主權行於外者, 即本國自主, 而不聽命於他國也, 各國平戰, 交際, 皆憑此權, 論此者, 嘗名之為外公法, 俗稱公法即此也.”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주권”: 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주권 관련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주권 개념의 전래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논저는 강상규의 「주권 개념의 도입과 한국 근대사」⁶, 김동택의 「근대 한국 주권 개념 연구」⁷를 꼽을 수 있다. 강상규는 『만국공법』 번역과 “주권”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중화질서가 뒤흔들리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김동택은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와 주요 저서들, 그리고 1904년 이후 계몽단체들은 발행한 다양한 협회보들을 통해 조선의 “주권” 수용과 정치적 활용을 서술하였다. 주권의 의미와 조선의 인식에 대해서는 박상섭의 『국가·주권』⁸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책의 제2부 주권 부분에서 주로 김윤식, 유길준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인식을 논설하였다. 주권 전래의 매체인 『만국공법』에 대해 다루는 주요 논저는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의 인식: 1880년대 개화파의 주권 개념의 수용을 중심으로」⁹, 「『萬國公法』을 통해 본 開港期 朝鮮의 對外認識」¹⁰, 「韓·日 兩國의 萬國合法 受容·認識」¹¹, 「동아시아 華夷論의 變容과 朝日의 萬國公法 수용의 他者認識」¹² 등이 있다.

현재 학계에는 초기 재일유학생에 관련된 논저가 많은 편이다. 초기 재일유학생은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전국에 학교와 학회를

-
- 6 강상규, 「주권 개념의 도입과 한국근대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8년 추계학술회의(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8.10.27), 37-63쪽.
- 7 김동택, 「근대 한국 주권 개념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7(2)(2017), 27-50쪽.
- 8 박상섭, 『국가·주권』(소화, 2008).
- 9 김현철,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의 인식: 1880년대 개화파의 주권 개념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8(1)(2005), 127-152쪽.
- 10 김세민, 「『萬國公法』을 통해 본 開港期 朝鮮의 對外認識」, 『사학연구』 52(1996), 211-232쪽.
- 11 柳在坤, 「韓·日 兩國의 萬國合法 受容·認識」, 『한일관계사연구』 7(1997), 34-85쪽.
- 12 김두진, 「동아시아 華夷論의 變容과 朝日의 萬國公法수용의 他者認識」, 『한국정치학회보』 44(3)(2010), 5-25쪽.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유학 중에는 일본에서 학회를 만들고 학회지를 발간하여 국민의 계몽과 교육을 위해 힘썼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재일유학생 잡지는 총 23종¹³이다. 그들이 만든 잡지들은 재일유학생단체의 사상을 파악하기에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으로 유학 간 조선인들이 늘어가면서 후일 일제시기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 세력이 되었다. 현재 재일유학생의 잡지를 중심으로 다룬 논문들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남일¹⁴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안남일은 재일유학생들이 발간한 각종 잡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창간사와 발간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외에 『친목회회보』¹⁵, 『태극학보』¹⁶, 『대한홍학보』¹⁷ 등 하나의 잡지에 중점을 두어 다룬 연구와 재일유학생의 활동과 인식 등¹⁸을 연구하면서 잡지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

-
- 13 “「학우」, 「회보」(명치대학조선유학생동지회회보), 「회지」(일본중앙(Chuo)대학우리동창회회지), 「회보」(경도제국대학조선유학생동창회회보), 「동창회회지」(조도전대학우리동창회회지), 「학보계」, 「근대사조」, 「학지광」, 「여자계」, 「삼광」, 「현대」, 「금강저」, 「학조」, 「개척」, 「학해」, 「친목회회보」, 「태극학보」, 「공수학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동인학보」, 「낙동친목회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홍학보」 등이 있다.” 안남일, 「1910년 이전의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연구」, 『한국학연구』 제58집(2016), 261-262쪽 참조.
- 14 안남일,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창간사, 발간사연구」, 『한국학연구』 64(2018), 117-137쪽.
- 15 차배근,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會報」에 관한 研究: 그 創刊趣旨·經緯·內容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35(1998), 1-56쪽; 차배근,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會報》에 관한 研究(續): 創刊後 終刊號까지의 發刊實態와 주요 內容」, 『언론정보연구』 36(1999), 79-157쪽.
- 16 안남일, 「태극학보 소재 의료 관련 텍스트 연구」, 『한국학연구』 68(2019), 97-118쪽; 전은경, 「태극학보의 표제 기획과 소설 개념의 정립 과정」, 『국어국문학』 171(2015), 605-638쪽.
- 17 이은선, 「1906-1910년 재일본 유학생 잡지 연구: 대한홍학보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2(2019), 55-79쪽; 전은경, 「유학생 잡지 대한홍학보와 문학 독자의 형성」, 『국어국문학』 169(2014), 301-345쪽.
- 18 박찬승, 「1910년대 도일유학과 유학생활」, 『역사와 담론』 34(2003), 113-139쪽;

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조선으로 전래된 주권 인식을 다룬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재일유학생들이 창간한 잡지의 창간사를 연구한 것과 문학, 의학, 과학 분야를 연구한 논술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러나 재일유학생들의 학회 활동 및 잡지를 통해 그들의 근대 주권 인식을 탐구한 논술은 아직 미흡한 현황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주권 개념과 재일유학생을 연결시켜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홍학보』 등 네 가지 잡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1905-1910년간 재일유학생의 주권 인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로써 서양 근대 주권 개념이 한반도로 유입되어 정착되는 과정 중의 한 단계인 1905-1910년間に 재일유학생 계층의 주권인식을 다룸으로써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법』 주권 용어 사용 문제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전에 조선인이 최초로 창간한 잡지인 『친목회회보』를 선행연구로 다룰 것이다.

II. 『태극학보』 및 대내적 주권 인식

1896년 2월 15일 일본 동경(東京)에서 창간한 『친목회회보』는 조선 잡지 역사상(雜誌歷史上) 조선인 손으로 처음 만든 국문 잡지로, 조선 일본유학생들의 최초의 단체였던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

이태훈, 「대한제국기 일본 유학생들의 유학생들과 유학의식: 1900년대 일본유학생들의 일본론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7(2015), 159-187쪽; 이면우, 「초기 일본유학생들의 학회활동을 통한 과학문화의 기여 1895-1910」, 『일본문화연구』 제16집(2005), 109-132쪽.

會)가 창간하였다. 이 『회보』는 창간 이후 2년 2개월 동안 모두 6호를 발간하면서 일본유학생들 간의 친목과 지식교환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표1- 『태극학보』에 게재된 주권(主權) 관련 논술

논술자	제목	주제어	호수	발행일자
會員 崔錫夏	「國家論」	主權者	제1호	1906년 8월 24일
會員 文一平	「自由論」	主權	제3호	1906년 10월 24일
張啓澤	「警察之沿革」	主權	제5호	1906년 12월 24일
張弘植	「國家와 國民企業心의 關係」	主權	제6호	1907년 1월 24일
郭漢倬 譯	「憲法」	主權	제6호	1907년 1월 24일
郭漢倬	「憲法 續」	主權	제9호	1907년 4월 24일
高宜煥	「愛國心の 淵源은 愛我心에 在焉」	主權	제12호	1907년 7월 24일
全永爵	「立法 司法 行政의 區別과 其 意義 (十號續)」	自主權	제12호	1907년 7월 24일
吳鎬裕	「學窓餘談 (二)」	主權, 主權國, 主權行動	제12호	1907년 7월 24일
Der Historker	「歷史譚 第十五回」	主權	제17호	1908년 1월 24일
崇古生	「歷史譚 第十六回」	主權	제18호	1908년 2월 24일
金洛泳 譯述	「世界文明史 (前號續)」	主權	제19호	1908년 3월 24일
李奎澈	「教師는 無階級之尊卑하고 其 責任은 無輕重之等差」	主權者	제19호	1908년 3월 24일
荇丹山人	「自主獨行的 精神」	主權	제21호	1908년 5월 24일
日本法學博士 有賀長雄原著 金志侃譯述	「保護國論」	主權, 自主權	제21호	1908년 5월 24일
松南	「舊染汚俗咸與維新」	主權者	제24호	1908년 9월 24일
中斐	「讀梁啓超所著 朝鮮亡國史略」	主權, 主權者	제24호	1908년 9월 24일
文一平	「我國青年의 危機 (續)」	主權	제26호	1908년 11월 24일

모국에 개화사상(開化思想)과 새로운 언론문물(言論文物)을 전파하는 데도 큰 몫을 했다.¹⁹ 『친목회회보』는 「大朝鮮君主國形勢如何」²⁰, 「清國: 論清國說」²¹, 「國民的大問題」²² 등 문장에서 조선이 처한 국제 형세 및 청국의 세력 실체, 국민의 의무 등을 거론하며 소개하였다.

『친목회회보』 중간 후에는 『태극학보』가 발간되었다. 1906년 8월 24일에 태극학회는 『태극학보』를 창간하여 1908년 12월 24일에 종간했다. 『태극학보』는 당시 발간된 학회지 중 가장 오랫동안 발간된 학회지였다. 이 학회의 목적은 회원 친목이었으나, “학원(學園)”이나 “강단(講壇)” 등의 고정란을 두어 국민 계몽과 교육에 기여했다.²³ 『태극학보』 “發刊의 序”에서는 “학식(學識)”을 대표적 키워드로 내세워 문명시대를 맞이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문과 식견”을 닦는 것인 만큼 국민의 지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열망을 학식의 배가를 통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²⁴

『태극학보』의 27호에 게재된 주권(主權) 관련 논술은 18편²⁵이다. 주로 主權, 主權者, 自主權, 主權行動, 主權國, 上主權國, 主權行使 등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태극학보』에 게재된 글에서 나타난 주권의 첫 인식은 국가 삼대 요소인

-
- 19 車培根, 『開化期 日本留學生들의 言論出版活動研究 1』(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67쪽.
 20 『친목회회보』 제1호, 20면, 車培根, 『開化期 日本留學生들의 言論出版活動研究 1』(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444쪽.
 21 『친목회회보』 제2호, 131면, 車培根, 『開化期 日本留學生들의 言論出版活動研究 1』(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557쪽.
 22 『친목회회보』 제3호, 8면, 車培根, 『開化期 日本留學生들의 言論出版活動研究 1』(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638쪽.
 23 이면우, 「초기 일본유학생들의 학회활동을 통한 과학문화의 기여 1895-1910」, 『일본문화연구』 제16집(2005), 116-117쪽.
 24 안남일, 「1910년 이전의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연구」, 『한국학연구』 제58집(2016), 275쪽; 「太極學報 發刊의 序」, 『태극학보』 제1호, 1906년 8월 24일.
 25 필자가 『태극학보』에 “주권” 용어를 단독이나 합체로 사용하면서 작성된 논술은 대략 18편으로 확인하였다.

주권, 영토, 국민(또는 인민, 신민) 중의 하나이며²⁶, 이에 대해 주로 3편에서 언급되었다. 주권은 국가의 구성요소로 체계적으로 논술한 문장인 「學窓餘談(二)」로 꼽을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신민, 토지, 주권으로 국가의 삼대 요소를 분명하게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민, 토지, 주권의 구체적인 의미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第三 主權 主權은 最高한 權力인디 國民을 支配하는 權이 有하고 國民은 此 權力을 絶對無限으로 服從하는 故로 此를 統治權이라 稱하니 治者가 被治者에 對하는 強制力이라. 此 主權라 有해야 國民을 統治하고 秩序를 維持하는디 만일 國家가 되고 此 主權이 無할 時는 此는 對等되는 人民의 集合團體라. 單히 社會라 稱함은 得하러니와 國家라 稱함은 得지 못할지니라.²⁷

위의 글에서 주권은 최고의 권력이며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이자 국민이 이 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이를 통치권이라 칭할 수 있으며 피치자에 대한 강제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권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성립될 수 없으며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이 세 요소로 구성됨으로써 한 사람처럼 인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상응한 권력 및 의무를 지닌다. 인격적 국가란 사회계약론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인격적 국가 등 단계 이론과 비슷하다고 보인다.

26 「國家와 國民企業心の 關係」, 『태극학보』 제6호, 1907년 1월 24일. “夫 國家는 一定한 主權, 領土, 國民, 을 有한 者 | 니 卽 一 大 國家의 經濟를 組織한 者를 云함이요 且 國民은 其 一定한 領土, 一定한 主權, 一定한 法律範圍內에 在해야 生命財産을 保全하고 安寧秩序를 維持하는 者 | 니 卽 一 小家族의 經濟를 組織한 者를 云함으로서 外敵團體는 敢히 此를 犯害하지 못하는 者 | 오.”; 『世界文明史(前號續)』, 『태극학보』 제19호, 1908년 3월 24일. “大凡 人文의 發達은 國家의 成立을 要하고 國家의 成立은 主權人民과 一定한 土地를 要함이라.”; 「學窓餘談(二)」, 『태극학보』 제12호, 1907년 7월 24일.

27 「學窓餘談(二)」, 『태극학보』 제12호, 1907년 7월 24일.

이외에는 1906년 8월 24일의 「國家論」 및 1907년 4월 24일의 「憲法續」에서 국가 성립 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주권자나 통치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第二는 權力이니 一定한 土地가 有하고 數多한 民族이 有하더라도 此를 統治하는 主權者가 無하면 國家가 아니니라. 故로 文明諸國에서는 治者와 被治者의 區分이 明瞭하야 人民이 其 主權者에게 對하야 絶對的으로 服從하느니라.²⁸

第一節 統治權과 主權의 區別. 國家란 者는 一定한 土地에 統一的으로 組織된 人民의 團體를 謂함시오 其 組織하는 權力을 統治權이라 稱하느니, 卽 統治權은 治者가 被治者를 治理하는 權을 指함이니, 卽 命令을 下하야 命令에 服從티 아니하는 者가 有할 때에는 強制로 遵奉케 함을 得하는 權을 指함이라. 故로 此 統治權이 無할 때에는 國家는 成立키 不能하느니, 統治權은 國家의 生命이라 可謂홀디니라, 或은 統治權과 主權을 混同하는 者이 有하느 然이느 主權과 統治權은 其 性質이 判然殊異하느니 此 二者의 性質이 同一타 思量함은 不可하니라.²⁹

위 인용문은 토지와 민족이 있더라도 주권자가 없다면 국가가 아니라는 논조이며 국가의 성립은 토지, 민족과 주권자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국가 삼대요소와 일치하지 않으며 주권과 주권자가 구별 없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논설은 주권과 통치권의 구별에 대해 상세하게 논술하였다.

이와 같이 1907년 4월 24일 곽한탁(郭漢倬)이 번역한 「憲法續」에서는 주권 및 국가 성립요소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의 “統治權과 主權의 區別” 부분에서 국가는 일정한 토지상에 체계적으로 조직된 인민의 단체를

28 「國家論」, 『태극학보』 제1호, 1906년 8월 24일.

29 「憲法 續」, 『태극학보』 제9호, 1907년 4월 24일.

가리킨다고 밝혔다. 통치권은 통치자가 피치자를 통치하는 권리로 정의하였는데 통치권이 없을 때 국가가 성립할 수 없으며 통치권이 국가의 생명이라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것과 달리 국가의 성립에 있어 주권 대신에 통치권을 언급하여 토지, 인민과 같이 국가 성립의 요소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삼대 요소에 있어서 『태극학보』에 게재된 3편 문장에서는 토지·국민·주권이나, 토지·국민·주권자, 토지·국민·통치권 등으로 달리 정의한 것이며 이는 주권, 주권자, 통치권 등을 혼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논설에서 통치자와 피치자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며 인민이 주권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1907년 1월 24일에 게재된 「憲法」이란 글은 주권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혔다.

第三節 國體上의 區別

國家를 國體上으로 區別할 時는 君主國과 民主이 有하니 君主國은 其 國家의 要素權力이 君主에 在한 者를 謂함시오. 民主國은 其 國家의 要素權力이 國民에 在한 者를 謂함이나 然이나 國家가 統治權의 主體를 行할 時에는 君主의 最高機關을 指함시오 民主國은 不然한 國을 指함이니라.

君主國云者는 君主가 主權을 總攬하는 國을 謂함이니 卽 皇帝 또는 王의 尊號를 有하고 國民의 最高位를 有한 一人의 君主가 主權을 總攬하는 者니 我國과 英, 獨, 露, 清, 日, 諸國과 如한 者니라.

民主國云者는 國民全體가 主權을 總攬하는 國家를 謂함이니 如此한 民主國에서 는 國民全體가 主權을 總攬한다 云하는 實狀 衆多의 國民이 共同하여 行政키 不能함으로 其中 一人을 撰擧하여 行政케 함이니 此를 通常 大統領이라 稱하니 現今 民主國은 北米合衆國과 佛國의 二者니라.³⁰

30 「憲法」, 『태극학보』 제6호, 1907년 1월 24일.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국체는 군주국과 민주국으로 구분하였다. 군주국의 주권 소재는 군주에게 있으며 민주국의 주권 소재는 국민전체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청나라, 일본과 같이 군주국이라 하였다.

第四節 政體上의 區別

國家를 政體上으로 區別할 때에는 立憲國과 專制國 二種에 可分함디니 立憲國은 其 政事에 一定한 形式이 有한 者를 謂함이고 專制國은 一定한 形式이 無한 者를 謂함이라.

立憲國云者는 憲法을 制定하여 主權行動의 自由를 制限하는 國家를 謂함이니 卽 主權의 行動을 各個의 機關에 分配하는 者라. 假如立法은 議會로 하여곰 行케 하고 行政은 政府로 하여곰 行케 하며 司法은 裁判所로 <27> 하여곰 行케 하는 政體를 立憲政體라 稱하느니 英, 米, 佛, 獨, 日 諸國과 如한 者니라.

專制國云者는 主權의 行動이 各個의 機關에 分排치 안코 專히 一人의 手中에 在한 國家를 謂함이니 其 專制權을 有한 人(假如君主)이 暗愚하던디 또는 補佐가 其人(假如臣)을 不得할 時는 往往이 壓制暴虐에 陷하여 國民에게 買怨하고 또는 無名의 師(戰爭)을 起하여 恥辱을 被하느니 現今 顯著한 專制國은 我國과 淸露國이니라.³¹

정체는 입헌국 및 전제국으로 이분하였다. 입헌국은 헌법을 제정하며 주권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이고 주권의 행동을 각각 정부 기관(機關)에 분배한 것이다. 전제국이란 주권의 행동이 정부 기관에 분배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손에 있는 국가이다. 조선은 청나라와 같이 정체에는 전제국이라 서술하였다.

31 「憲法」, 『태극학보』 제6호, 1907년 1월 24일.

그러므로 「憲法」에 따르면 조선이 국체는 군주국이며 정체는 전제국이며 청나라와 같은 국체 및 정체이다. 조선의 주권 소재는 군주에게 있으며 주권의 행사는 각각 정부 기관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자유의 제한이 없이 군주 한 사람에게 의해 행사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군주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憲法」에 의하면 이러한 군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은 통치권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所謂 統治權云者는 治理호는 權力이호는 主權云者는 最上, 最高호는 權力을 指호는 故로 如或 統治權이 最高호는 時에는 此를 主權이라 云호는 可타 호려니와 萬一 統治權이 最高티 아닌 時에도 此를 主權이라 云호야 其 國의 統治者를 主權者라 호는 甚大호는 誤謬이나라.³²

『태극학보』에 게재된 「憲法」 번역문에 의하면 통치권은 통치하는 권력이며 주권은 흔히 최상, 최고의 권력을 가리킨다. 통치권은 최고의 권력이 아닐 경우에는 주권과 다르며 통치자도 주권자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주권이 최상, 최고의 권력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 외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五는 民族建國 問題니 一國人이 다 自治自立호야 外邦이나 或 他族으로 호여 其 內治의 主權을 毫末이라도 干涉치 못호게 호느니 是는 本國이 外國의게 所爭호는 自由호……

皆曰 我種族이 아니면 決코 我主權을 不許호리라 호의 出호는 거시니 비록 其 所向의 目的은 或 達호며 或 不達호는 其 精神은 一般이니 此는 民族의 自由를

32 「憲法」, 『태극학보』 제6호, 1907년 1월 24일.

위에서 보이듯이 한 민족은 자치하는 자유가 있으며 자주독립으로 민족 내부의 사정을 해결할 주권이 있으며 외방(外邦)이나 다른 민족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권력이 있다. 이는 대내적 주권은 일국의 최고 권력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주권이 최고, 최상의 권력이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의 소재는 군주에게 있고 주권의 행사는 군주에 의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극학보』에 게재된 18편에서 주권에 관련 논술은 주로 국가 성립 삼대 요소, 국체 및 정체, 통치권 및 주권의 구별 등 세 방면에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태극학보』에 의하면 첫째, 주권은 토지와 국민(또는 인민, 신민)과 같이 국가 성립의 삼대 요소이다. 둘째, 주권은 한 국가의 정체 및 국체의 결정적인 조건이다. 셋째, 주권은 국가 내에서 최고, 최상의 권력이므로 통치권과 차이가 있다.

『태극학보』에는 국가성립 삼대 요소에 대해 주권·토지·국민(또는 인민, 신민)으로 소개한 것 외에 주권자·토지·국민 또는 통치권·토지·국민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주권, 주권자, 통치권 등을 혼용한 현상이며 『태극학보』 저자들 간에 주권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 주권은 국가 내에서 최고의 권력이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의 소재는 군주에게 있고 주권의 행사는 군주에 의해야 함으로 조선의 국체는 군주국이며 정체는 전제국이다.

이러한 인식의 형성 배경은 한말에 출판된 법학서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한말의 법학교과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33 「自由論」, 『태극학보』 제3호, 1906년 10월 24일.

대개 일본의 대학들의 강의록을 번역 편집하여 전문학교 교재를 출판하였다.³⁴ 그중에서 법률가 유치형(俞致衡)이 강술(講述)한³⁵ 『헌법』을 꼽을 수 있다. 『헌법』³⁶에서는 주권의 소재는 황위(皇位)에 존재하며 황제는 주권자라고 서술하였다. 이것도 역시 군주제를 지향한 것이고 군주주권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 『태극학보』는 주권의 대외적 개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Ⅲ. 『대한학회월보』 및 대외적 주권 인식

『대한학회월보』는 1908년 2월 25일에 창간되어 동년 11월 25일 통권 9호로 중단되었다. 학회지의 구성은 연단(演壇)·학해(學海)·사전(史傳)·문원(文苑)·잡찬(雜纂)·회보(彙報) 등으로 기존의 학회지와 비슷한 체계를 갖추었다.³⁷ 『대한학회월보』 “발간서”에서는 “단합(團合)”을 대표적 키워드로 내세워 ‘현재 여러 단체들로 구성되고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해서 동족친애와 일심단합해야 함의 중요성’을

34 崔鐘庫, 「開化期の 法學書 解題」,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韓國近代法制史料叢書: 第7卷, 憲法』(亞世亞文化社, 1981), 8쪽.

35 專門學校教材는 대개 日本의 大學들의 講義錄을 번역 편집하여 출판되었는데, 여기서 인용한 俞致衡의 『헌법』이란 책은 “누가著”라는 것이 아니며 “누가講述”이라고 이름이 붙여있다.

36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韓國近代法制史料叢書-第7卷, 憲法』(亞世亞文化社, 1981), 20쪽. “君主는 神聖하니 不可侵이라. 蓋君主는 主權者인즉 君主를 侵함은 即國을 傷함이라. 國이 國으로 存함은 主權이 在함에 由함이니. 若主權이 他力을 依하야 侵犯되는바 有할진대 是는 即國의 存在가 侵犯되는 者라.”

37 이면우, 「초기 일본유학생들의 학회활동을 통한 과학문화의 기여 1895-1910」, 『일본문화연구』 제16집(2005), 124쪽.

강조하고 있다.³⁸

『대한학회월보』의 9호 중에서 주권 용어는 총 15편의³⁹ 논술에서 主權, 主權者, 自主權, 自主權利, 宗主權 등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대한학회월보』에 게재된 주권(主權) 관련 논술

논술자	제목	주제어	호수	발행일자
吳政善	「團合은 富強을 産ᄃᆞᆫ 母」	主權	제1호	1908년 2월 25일
南宮營	「英國과 印度의 關係」라	主權	제1호	1908년 2월 25일
南宮營	「英國과 印度의 關係」라 (前號續)	主權	제2호	1908년 3월 25일
洪聖淵	「國家程度는 必自個人之自助品行」	自主權利	제3호	1908년 4월 25일
傍聽人 友古崔	「甲乙會話」	主權	제3호	1908년 4월 25일
友洋 崔錫夏	「韓國法律觀」	主權者	제4호	1908년 5월 25일
-	「報說」	主權	제6호	1908년 7월 25일
東山 蔡基斗	「平和的 戰爭」	宗主權	제6호	1908년 7월 25일
姜邁	「重公德排虛飾論」	自主權	제6호	1908년 7월 25일
東山 蔡基斗	「平和的 戰爭」(續)	主權	제7호	1908년 9월 25일
碧广 金淇驩	「我的 獨立疑를 破開ᄃᆞᆫ 이라」	主權	제8호	1908년 10월 25일
金載汶	「蠶學說」	主權	제8호	1908년 10월 25일
友洋生	「日本 文明觀」	主權	제8호	1908년 10월 25일
韓興教 譯	「政治上으로 觀ᄃᆞᆫ 黃白人種의 地位 (「라인시」氏 略述)」	宗主權	제8호	1908년 10월 25일
-	「隨聞隨錄」	主權者	제9호	1908년 11월 25일

38 안남일, 「1910년 이전의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연구」, 『한국학연구』 제58집 (2016), 276쪽.

39 필자가 『대한학회월보』에 “주권” 용어를 단독이나 합체로 사용하면서 작성된 논술은 대략 15편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대한학회월보』는 주권이 토지, 인민과 같이 국가의 삼대 요소라 정의하였다.⁴⁰ 그리고 영국과 인도의 관계에 있어서 “토지의 주권”⁴¹, 「平和的 戰爭」⁴²에서 宗主權, 「重公德排虛飾論」⁴³에서는 自主權으로 서술하였다. 이외에 『대한학회월보』에는 주권의 대외적과 대내적 개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慧眼이 有호 日本人은 此時를 不失호고 內政을 革新호야 憲法을 發布호야 國民에게 自由權利를 許호며 外交를 刷新호야 治外法權을 撤回호야 對等條約을 締結호야 汚損호얏던 主權을 完全히 回復호야 千載之偉業을 樹立호얏도다.⁴⁴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내정 개혁 및 국민에게 자유권을 부여하며 대외적으로 대등조약을 체결하면서 주권을 회복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는 대등조약을 체결한 것은 주권의 일부라고 본 것이다. 이는 근대 주권의 대외적 개념에 부합하여 만국공법의 국제질서에 일본의 주권 행사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내정 개혁 및 주권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재일유학생 중에는 청나라를 향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며 주권자 개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 존재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40 「報說」, 『대한학회월보』 제6호, 1908년 7월 25일. “三曰 國家的 主義니 領土臣民의 主權尊重과 均衡勢力의 國際關係로 或 實利를 主唱호며 或 外交를 是務호이니 政治家 範圍에 屬호이오.”; 「我的 獨立疑를 破開호이라」, 『대한학회월보』 제8호, 1908년 10월 25일. “大抵 國家는 疆土와 人民과 及主權으로 要素를 作호나니 엇지 一國의 獨立에 無關係라 호리오 然이나 그처럼 絶對的 獨立의 資料라고는 不許호느니.”

41 「英國과 印度의 關係」라, 『대한학회월보』 제1호, 1908년 2월 25일; 「英國과 印度의 關係」라(前號續), 『대한학회월보』 제2호, 1908년 3월 25일.

42 「平和的 戰爭」, 『대한학회월보』 제6호, 1908년 7월 25일.

43 「重公德排虛飾論」, 『대한학회월보』 제6호, 1908년 7월 25일.

44 「日本 文明觀」, 『대한학회월보』 제8호, 1908년 10월 25일.

恭表哀悼 我 東洋大陸에 最古 歷史와 最先 文明을 有 訖 罔더러 我大韓에 對호야 歷史上과 地理上과 人種의 政治的으로 過去 現在 未來를 勿論호고 最切近關係를 有 訖 淸國光緒皇帝 (載恬) 陛下께서는 本月十三日, 同國의 事實上으로 主權者된 西太后 陛下께서는 本月 十五日에 崩殂호셨다 호니 吾儕는 哀悼의 同情을 不勝호는 同時에 東洋 前途를 爲호야 憂忡호기를 不巳호노라.⁴⁵

위의 글은 1908년 11월 청나라 光緒皇帝 및 西太后 崩殂에 대한 내용이며 비통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이 논설에 의하면 청나라를 동아시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최초의 문명을 가진 나라로 인식하며 조선과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정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불문하여 제일 가까운 관계를 가진 나라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종래 조·청의 종藩(宗藩)관계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同國의 事實上으로 主權者된 西太后 陛下”라고 서술한 것은 “주권자”가 西太后라 한 것이다. 즉 명분상으로 청나라의 주권자는 군주인 光緒皇帝이며 사실상 주권자는 西太后였다는 뜻이다. 이는 청나라에서 황제의 권력을 주권으로 인식하며 통치자를 주권자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나라의 군주제에서는 황제의 권력을 주권 및 주권자, 글자대로의 뜻으로 이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학회월보』는 주권이 토지, 인민과 같이 국가의 삼대 요소라고 분명하게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내정 개혁 및 국민에게 자유권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 대등조약을 체결하여 주권을 회복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근대 주권의 대외적 개념에 대해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글 가운데 청나라를 향한 속국 감정이 나타나고 주권 및 주권자에 대해 군주제 하

45 『隨聞隨錄』, 『대한학회월보』 제9호, 1908년 11월 25일.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IV. 『대한유학생회학보』 및 국제법적 주권 인식

1907년 3월 3일 대한유학생회에서는 기관지인 『대한유학생회학보』를 창간했지만, 같은 해 5월 20일 통권 3호로 종간을 하고 말았다. 이 학회지는 『태극학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학회의 목적은 친목도모와 지식 교환뿐만 아니라, 당시 선진국인 일본을 통해 얻은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국내에 전파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이었다.⁴⁶

『대한유학생회학보』 “취지서”에서는 “실력(實力)”을 대표적 키워드로 내세워 재일유학생의 책무가 개인 영달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많은 인적 자원의 가족사회와 같은 친밀함과 학문적 교류를 통한 세계문명에 대한 개안을 통해 국가의 “실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대한유학생회학보』의 3호 중에서 주권 용어는 총 7편⁴⁸에서 사용되었으며 주로 主權, 主權者, 國家主權 등의 형식으로 나왔다.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46 이면우, 「초기 일본유학생들의 학회활동을 통한 과학문화의 기여 1895-1910」, 『일본문화연구』 제16집(2005), 122쪽.

47 안남일, 「1910년 이전의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연구」, 『한국학연구』 제58집(2016), 275쪽.

48 필자가 『대한유학생회학보』에 “주권” 용어를 단독이나 합체로 사용하면서 작성된 논술은 대략 7편으로 확인하였다.

표3-『대한유학생회학회보』에 게재된 주권(主權) 관련 논술

논술자	제목	주제어	호수	발행일자
柳承欽	「公共主義說」	主權	제1호	1907년 3월 3일
李圭正	「警察爲國家干城」	主權, 主權者	제1호	1907년 3월 3일
李昌煥	「法律과 道德의 區別」	國家主權	제1호	1907년 3월 3일
學凡朴勝彬 傍錄	「擁爐問答」	主權	제2호	1907년 4월 7일
金寬	「愛國은 誠心」	主權	제2호	1907년 4월 7일
李承瑾	「國際 公法論」	主權	제2호	1907년 4월 7일
李承瑾	「國際 公法論 (續)」	主權, 國家主權	제3호	1907년 5월 25일

『대한유학생회학회보』에는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와 같이 국가구성 요소로 주권을 국민, 토지와 같이 언급한 적이 있지만⁴⁹ 주권의 대내적, 대외적 의미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는 대신에 대외적 시각에서 주권을 다루었다.

以上所述數者之間에 人民이 有하고 領土 | 無하며 領土有하고 人民이 無
 則國無基礎하고 領土와 人民이 有하고 服從主權을 不知는 則國無機關하고 土地人
 民과 服從政權이 有하고 共同獨立과 各人生存의 目的이 無는 則國無精神 하니

49 「警察爲國家干城」, 『대한유학생회학회보』 제1호, 1907년 3월 3일. “凡國家者는 以領土 人民으로 爲要素하고 統治者가 爲主權而定法律하야 拘束範圍區域內一般人民之行爲하 는니 欲察其行爲 | 된 不可無行政이요 欲施其行政인된 不可無警察이니 其 必要가 倘何 如哉며 警察者는 全國之耳目也라 [...] 全體之重要가 都在於警察之明不明 하니 由此觀 之은된 國家가 爲主體하고 首가 爲主權者 즉 見聞指導聞臭之外에 行使護身之物은 手足 也니.”; 「擁爐問答」, 『대한유학생회학회보』 제2호, 1907년 4월 7일. “(先憂子)曰 國家者 는 有人族이 據其領土하고 戴其主權하야 組成團體之謂也니 吾輩之所愛者는 卽 我二千 萬同胞가 保守此三千里疆土하고 戴有我維一之主權하야 以得而安享福利가 是也며 愛者 는 有其損而圖其益也니 然則吾輩之愛國云者는 不外乎憂此三者之損하야 而圖其益也니 라.”; 「愛國은 誠心」, 『대한유학생회학회보』 제2호, 1907년 4월 7일. “今에 國君과 國民을 勿論하고 其 國家에 對는 責任을 若一不善하야 國이 國된 體面을 損失하면 其 土地와 主權을 不得保守은 姑舍하고 其 一身의 生活은 不能할 거시오.”

數者 | 具備호야써 互相組織호여야 是를 集合體라 謂호고 是들 國家라. 謂호고 是를 國際法主體의 國家라 謂호느니라.⁵⁰

1907년 4월 7일 「國際 公法論」에서 人民, 領土, 主權으로 국가의 구성을 거론하였다. 국제법 주체의 국가는 인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제법적 시각에서 국가의 구성을 논술한 것이었지만 주권을 대외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1907년 5월 25일에 「國際 公法論(續)」에서도 계속해서 주권이 領土之區域, 領海에서 소개되었다.

土地者는 人民이 賴호야써 生活호고 國家主權의 範圍를 반다시 是로써 定호미 된 者 | 니 此中の 國際에 關호는 者 | 有호호니 一曰 領土의 取得이오 一曰 領土의 區域이라 今에 領土之區域을 先論호리로다.....

萬國通航의 河流를 國際河라 謂호느니 其 普通의 規則이 有호호니 (一)은 領河國이 河에 對호야 其 主權을 不失호고 (如司法權警察權之類) 航行國이 亦領河國의 權利侵犯을 不得호.....⁵¹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법에서 영해, 영토는 일국의 주권에 속하며 향해 권리도 이로 인해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권의 국제법적 의미를 다룬 것으로 대외적 시각에서 주권을 소개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유학생회학보』에 게재된 7편의 주권 관련 논술에서 주권이 국가의 요소로 세 번이나 언급되었으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태극학보』에서 주권의 대내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논술한 것과 달리 『대한유학생회학보』에서는 주권의 국제법적 의미를 두 번이나

50 「國際 公法論」, 『대한유학생회학보』 제2호, 1907년 4월 7일.

51 「國際 公法論(續)」, 『대한유학생회학보』 제3호, 1907년 5월 25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의 국가 구성요소 및 국제법적 의미는 주권에 대한 기본 인식 및 법적 서술이며, 『대한유학생회학보』의 근대적 만국공법에 의한 주권 의미는 체계적인 논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V. 『대한홍학보』 및 서양 주권론 인식

대한홍학회는 태극학회, 공수학회, 대한학회 등 많은 유학생 단체를 통합한 학회이다.⁵² 대한홍학회의 기관지인 『대한홍학보』는 1909년 3월 25일에 창간하여 이듬해 6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까지 통권 13호를 출판했다. 기본적인 내용 구성은 『대한학회월보』와 거의 같다. 이 학회지에 실린 「투고상의 유의점」에는 “학예(學藝)”를 “법(法), 정(政), 경(經), 철(哲), 윤(倫), 심(心), 지(地), 역(歷), 박물(博物), 이화(理化), 의(醫), 농(農), 공(工), 상(商)”으로 분류하고 있다.⁵³

『대한홍학보』 “취지서”에서 “학문(學問)”을 대표적 키워드로 내세워 학문의 흥망성쇠가 한 나라의 문명을 판정하는 만큼 일부 동포의 지덕을 계발하지 못하면 새로운 학문을 흥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문을 바탕으로 홍학의 기초가 되는 지덕의 계발에 힘써 조국의 문명부강을 위해 노력해야

52 「報說」, 『대한홍학보』 제1호, 1909년 03월 20일. “意라 人類는 離群獨立치 안코 知識은 逐日 增長호는 故로 曩日에 內國의 有志君子로 호여금 言辭가 咨嗟호고 唇舌이 焦勞토록 批評이 喧騰케 호던 我留學生界의 曰 太極 曰 大韓, 曰 共修, 曰 研學 等 各會會員이 曁自昨年冬으로부터 一口同聲에 虛心忠告호야 舍會의 議論이 到處에 唱道호야 맛침← 隆熙 三年 一月에 各會가 摠合호 結果로 大韓興學會를 成立호였스니 此는 我韓同胞가 日本國에 留學호 歷史가 有호 以後로 今日과 如히 圓滿호 大團體가 集會호은 實노 未曾有호 盛學로 稱호실지라다.”

53 이면우, 「초기 일본유학생들의 학회활동을 통한 과학문화의 기여 1895-1910」, 『일본문화연구』 제16집(2005), 127쪽.

표4-『대한홍학보』에 게재된 주권(主權) 관련 논술

논술자	제목	주제어	호수	발행일자
金永基	「適者生存」	自主權	제1호	1909년 3월 20일
韓興敦 譯	「觀乎 黃白人種의 地位 (前 大韓學報 第九號 續)」	主權者	제1호	1909년 3월 20일
編輯人 譯	「自治의 模範」	國家主權	제3호	1909년 5월 20일
姜邁	「學校의 概說」	主權者	제3호	1909년 5월 20일
金振聲	「立憲世界」	主權	제4호	1909년 6월 20일
朴海遠	「國家種類의 大略」	主權	제4호	1909년 6월 20일
金淇驩	「國民必究의 國際急先務」	主權	제5호	1909년 7월 20일
MH生	「東西 古蹟의 一斑」	主權	제5호	1909년 7월 20일
嘯海生膽	「咸鏡道 壬辰義兵 大捷碑文」	主權者	제5호	1909년 7월 20일
蠶山人 朴有秉	「歐羅巴의 聯合」	主權者	제6호	1909년 10월 20일
嘯卯生	「會員諸君」	主權	제7호	1909년 11월 20일
吳惠泳	「大統領 세아스氏의 鐵血的 生涯」	主權者	제7호	1909년 11월 20일
岳裔	「民是論」	主權	제8호	1909년 12월 20일
吉昇翊	「青年國之元氣」	主權者	제8호	1909년 12월 20일
SK生	「政治論」	主權, 主權者, 主權論	제8호	1909년 12월 20일
吳惠泳	「大統領 세아스氏의 鐵血的 生涯 (續)」	主權者	제8호	1909년 12월 20일
SK生	「政治論」	主權	제9호	1910년 1월 20일
朴海遠	「宜有正眼」	主權	제11호	1910년 3월 20일
李寶鏡	「文學의 價値」	主權者	제11호	1910년 3월 20일
岳裔	「三要論」	主權者	제12호	1910년 4월 20일
郭漢倬	「條約概意」	主權者, 主權國, 主權	제12호	1910년 4월 20일
金洛	「吊梅」	主權	제12호	1910년 4월 20일
KM生	「本會 今昔之感」	主權, 大韓國主權	제13호	1910년 5월 20일
HS生	「西藏概觀 (第十號續)」	主權者, 主權, 宗主權	제13호	1910년 5월 20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대한홍학보』의 13호 중에 주권 용어는 총 24편⁵⁵에서 주로 主權, 自主權, 主權者, 國家主權, 主權論, 國家主權者, 主權國, 大韓國主權, 宗主權 등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대한홍학보』에는 국가의 요소로 주권을 언급한 문장⁵⁶이 많은 편이며 「條約概意」⁵⁷에서 국제법적 주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는 주권국, 주권자, 자주권 등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國民必究의 國際急先務」 및 「政治論」에서 주권의 대외적 특징과 서양 주권론을 소개하며 거론하였다.

國家는 平等이오 主權은 同等이라 決코 其 國家를 勒劫함이 아니오 其 主權을 威嚇함이 아니라 卽 其 國家의 一私人을 勒劫함이니 (例如甲國이 乙國大臣을 威嚇하야 條約을 調印) 萬若 其 一私人이 死로써 爭호면 其 國權은 不可犯이라 國家 勒劫과 主權 威嚇은 戰爭인이오 外에는 勒劫 威嚇이 絶對의 無호며 又 戰爭도 勒劫 威嚇의 名義로는 世界萬國의 輿論에 不許호는 비라.⁵⁸

54 안남일, 「1910년 이전의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연구」, 『한국학연구』 제58집 (2016), 276쪽.

55 필자가 『대한홍학보』에 “주권” 용어를 단독이나 합체로 사용하면서 작성된 논술은 대략 24편으로 확인하였다.

56 「民是論」, 『대한홍학보』 제8호, 1909년 12월 20일. “一國의 是를 定코자 卽진된 先此 一國民의 是를 確立치 아니치 못호지니 今日 我韓을 爲호야 國是를 說호는 者는 만다 시 民是를 先定호진져 書曰 民維 邦本이니 本固 邦寧이라호니 人民 領土 及 主權이 國家의 要素가 됨은 今古의 原則이라.”; 「政治論」, 『대한홍학보』 제9호, 1910년 01월 20일; 「三要論」, 『대한홍학보』 제12호, 1910년 4월 20일. “大抵 古代 國家의 興亡隆衰호 所以를 考호진된다. 一定호 理由 | 自在호니 卽 對外原因과 對內原因이 是也 | 라. 對外原因은 外國의 戰亂의 結果로 一國의 滅亡을 招호는 바이니 甲國의 滅亡은 乙國의 併呑이 是호요 對內原因은 主權의 萎靡와 民心의 腐敗를 由호이니 國家要素의 一를 缺하면 其 國家난 完全한 國家 | 라 云호기 難한지라. 故로 經世에 志를 有한 者난 其 興亡의 由來를 考察하야써 將來의 實鑑을 作하나니라.”

57 「條約概意」, 『대한홍학보』 제12호, 1910년 4월 20일.

58 「國民必究의 國際急先務」, 『대한홍학보』 제5호, 1909년 7월 20일.

위 글에서 국가는 평등하며 주권은 동등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서 서로 동등하며 평등한 것을 의미한 것이다. 이는 근대 서양 국제질서를 가리킬 수 있으며 주권의 대외적 한 특징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09년 12월 20일 「政治論」에서 근대 주권론을 소개하면서 특히 홉스 및 로크의 주권론을 다루었다.

一國家는 其 主權의 獨立을 維持하고 其 臣民의 <33>福利를 增進키 爲하야 法令을 施하고 機關을 設하야 行動하나니 此 機關에 列하 者는 卽 政治에 參與하 者이 된지라. 行政官은 國家內政에 參하고 立法者는 國家立法에 參하고 裁判官은 司法에 參하고 外交官은 外政에 參하고 陸海軍人은 軍政에 參하야 各其 方面으로 法令을 制定活動하시 此等 行動의 主體는 國家의 統御者 | 有하야 其 最 無無上하 主權을 行使하는 故로 其 國家 以外의 人民으로 하야 其 局에 當함을 不得케 하나니 此는 何故인고 曰 政治의 要는 一國의 獨立富強을 保維함에 在하리라……

夫政治學이란 者는 國家의 主權者가 其 領土及 臣民을 統御하는 事를 攻究하는 學問이라……

故로 政府은 政學 以前에 起하엿나니 堯舜三代의 治績이 有하 然後에 孔孟의 政治論이 起하고 第十七 世紀 英國의 內亂과 及 革命이 有하 後에 홉부스의 主權論과 록쿠의 憲法論이 起하엿스니 此를 因하야 可히 証明하 바이로다.⁵⁹

위 글에서 국가는 주권의 독립을 유지하고 신민의 복리를 증진하게 만들며 행정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는 최고의 주권을 행사할 권력이 있으며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의 부강(富強)을 실현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정술(政術)에 대해 “堯舜의 治績, 孔孟의

59 「政治論」, 『대한홍학보』 제8호, 1909년 12월 20일.

政治論, 영국의 내란 및 혁명”에 이어서 홉스의 주권론 및 로크의 헌법론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일부 재일유학생이 서양의 주권론을 접촉하면서 주권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동양의 역사 및 서양의 근대 주권 이론을 연결시켜서 논의하며 인식한 것이다. 이 글은 홉스의 주권론 및 로크의 헌법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지만 주권은 근대 국가정치의 중요한 조건이므로 중시한 것이다.

예문에서 재일유학생들이 서양의 주권 이론을 접촉하면서 근대 주권 개념을 동양의 유교사상과 연결시켜 정치를 해석하며 본국의 사정에 적용하기 시도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이 주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근대 주권 개념에 대한 인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노정된다. 이는 1910년 5월 20일의 「本會 今昔之感」에서 확인할 수 있다.

嗟呼嗟呼라 不然호도다. 蓋 本會의 創始時代 卽 光武 二年頃은 吾國의 令譽가 列強과 比肩호야 大韓國主權이 堂堂호얏거늘 今日 本會의 團合時代 卽 本會의 成功時代라 할만호 此日은 我國狀態가 何如호 悲境의 陷호얏는고 此는 諸君도 稔知호시는 배라.⁶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주권이라 주권을 언급하였으며 조선의 사정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주권 용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분명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홍학보』에도 주권이 국가의 구성요소로 여러 번 논술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권에 대한 기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유학생회학보』와 같이 국제법적 주권의 의미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한홍학보』에서 특이한 점은 서양 학자인 홉스의

60 「本會 今昔之感」, 『대한홍학보』 제13호, 1910년 5월 20일.

주권론 및 로크의 헌법론을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재일유학생이 서양 근대 주권 개념을 인식하게 된 것이 반영되었으며 재일유학생들이 근대 주권 개념을 접하고 일부 학생이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논술에서 저자들이 주권, 주권자, 대한국주권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주권의 구체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VI. 맺음말

1870-1880년대 『만국공법』의 전래부터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법』에 주권 용어의 입헌까지 서양 근대 주권 개념이 조선에서 전래되어 정착되었다. 40년 가까이 된 주권 개념의 전래 가운데 조선인의 주권 인식은 시기 및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제시기 한반도의 주권 지식인 계층은 재일유학생 출신들이었으며 그들의 주권 인식이 한반도의 주권 개념 정착에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초기 재일유학생들과 주권 인식을 연결시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일본에 조선 유학생들이 발간한 학회지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홍학보』 등 4종에 게재된 주권 관련 논술 총 64편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회지에 게재된 주권 관련 논술은 주권을 국가의 구성요소로 소개한 논술이 많다.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홍학보』에는 국가 구성요소로 주권을 여러 번 언급하였으며 한말 재일유학생들의 주권에 대한 기본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주권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한 논술도 적지 않다. 특히 『대한유학생 회학보』와 『대한흥학보』에는 국제조약이나 영해 등 분야에서 주권을 다루었으며 주권을 국제적 시각에서 해석하였다. 국가는 동등한 것이며 주권은 대등한 것이라는 논술은 근대 주권국가의 국제질서에 부합하며 만국공법의 대외적 주권 인식으로 드러났다.

셋째, 주권, 주권자, 통치권 등 용어를 혼용한 현상이 존재한다. 『태극학보』에서 국가구성요소에 대해 국민, 토지, 주권 외에 주권자, 통치권 등도 같이 언급한 것에서 주권, 주권자, 통치권 등의 용어 혼용 양상을 알 수 있다.

넷째, 주권의 대내적 해석은 근대 주권 개념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태극학보』에 의하면 조선에서 주권은 국가 내에서 최고의 권력이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의 소재는 군주에게 있고 주권의 행사는 군주에 의해야 함으로, 조선의 국체는 군주국이며 정체는 전제국이다. 이는 근대 주권의 대내적 개념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권이고 자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외부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고 군주의 손에 있으며 군주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군주주권론은 역시 근대 국민주권론과 다르다. 이러한 인식의 형성배경은 당시 출판된 법률 서적인 『헌법』 등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대한학회월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홍학보』, 『태극학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main/main.do).

2. 단행본

권희영, 『번역과 동아시아의 근대』.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박상섭, 『국가·주권』. 소화, 2008.

延世大現代韓國學研究所, 『(梨花莊 所藏) 雪南 李承晩文書(東文篇6: 大韓民國臨時政府 關聯文書1)』. 中央日報社 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車培根, 『開化期 日本留學生들의 言論出版活動研究 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韓國近代法制史料叢書-第1卷 萬國公法』. 亞世亞文化社, 1981.

3. 논문

김현철, 「개화기 『만국공법』의 전래와 서구 근대주권국가의 인식: 1880년대 개화
과의 주권 개념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1
호, 2005, 127-152쪽.

강상규, 「주권 개념의 도입과 한국근대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8년 추계학
술회의(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8.10.27), 37-63쪽.

김동택, 「근대 한국 주권 개념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7(2), 2017, 27-50쪽.

김세민, 「『萬國公法』을 통해 본 開港期 朝鮮의 對外認識」. 『사학연구』 52, 1996,
211-232쪽.

김두진, 「동아시아 華夷論의 變容과 朝日의 萬國公法수용의 他者認識」. 『한국정치학
회보』 44(3), 2010, 5-25쪽.

박찬승, 「1910년대 독일유학과 유학생생활」. 『역사와 담론』 34, 2003, 113-139쪽.

이면우, 「초기 일본유학생들의 학회활동을 통한 과학문화의 기여 1895-1910」.
『일본문화연구』 제16집, 2005, 109-132쪽.

이은선, 「1906-1910년 재일본 유학생 잡지 연구: 『대한홍학보』를 중심으로」.
『우리문화연구』 62, 2019, 55-79쪽.

이태훈, 「대한제국기 일본 유학생들의 유학생생활과 유학의식: 1900년대 일본유학

- 생들의 일본론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7, 2015, 159-187쪽.
- 안남일, 「1910년 이전의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연구. 『한국학연구』 제58집, 2016, 259-279쪽.
- _____,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창간사, 발간사연구. 『한국학연구』 64, 2018, 117-137쪽.
- _____, 「태극학보 소재 의료 관련 텍스트 연구. 『한국학연구』 68, 2019, 97-118쪽.
- 柳在坤, 「韓·日 兩國의 萬國合法 受容·認識. 『한일관계사연구』 7, 1997, 34-85쪽.
- 전은경, 「유학생 잡지 『대한홍학보』와 문학 독자의 형성. 『국어국문학』 제169호, 2014, 301-345쪽.
- _____, 「태극학보의 표제 기획과 소설 개념의 정립 과정. 『국어국문학』 171, 2015, 605-638쪽.
- 차배근, 「大朝鮮人日本留學生 「親睦會會報」에 관한 研究: 그 創刊趣旨·經緯·內容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35, 1998, 1-56쪽.
- _____, 「大朝鮮人日本留學生 《親睦會會報》에 관한 研究(續): 創刊後 終刊號까지의 發刊實態와 주요 內容. 『언론정보연구』 36, 1999, 79-157쪽.

국문초록

주권 개념은 1870-1880년대부터 『만국공법』, 『공법회통』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서양에서 청·일을 경유하며 조선으로 전래되었다. 이러한 서양 근대 주권 개념이 조선에 전래, 정착되는 과정에서 조선인의 주권 인식은 시기와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제시기 한반도의 주된 지식인 계층은 재일유학생 출신들이었다. 초기 재일유학생들의 주권 인식이 한반도의 주권 개념 정착에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주권 연구에 있어서 재일유학생들의 학회 활동 및 잡지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므로 본고에서는 『태극학보』, 『대한학회월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흥학보』 등 4종의 잡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1905-1910년간 재일유학생의 주권 인식을 연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학회지에 게재된 주권 관련 논술 중에 주권이 국가의 구성요소라고 소개한 논술이 많다. 둘째, 주권이 국제법적으로 해석된 논술도 적지 않다. 셋째, 주권과 주권자, 통치권 등 용어를 혼용한 현상이 존재한다. 넷째, 주권의 대내적 해석은 근대 국민주권 개념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태극학보』에 의하면 조선에서 주권은 국가 내에서 최고의 권력이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한 주권의 소재는 군주에게 있고 주권의 행사는 군주에 의해야 함으로 조선의 국체는 군주국이며 정체는 전제국이다.

투고일 2020. 3. 2.

심사일 2020. 4. 14.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주권(Sovereignty), 재일유학생(Korean students who had studied in Japan), 『태극학보』(Taegukhakbo), 『대한학회월보』(Dahanhakhoi Wolbo), 『대한유학생회학보』(Daehanyuhaksaeghoe Hakbo), 『대한흥학보』(Daehanhunghakbo)

Abstracts

The Study of the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of the Korean Students Who Had Studied in Japan (1905-1910):
Focusing on the *Taegukhakbo*, *Daehanhakhoi Wolbo*, *Daehanyuhaksaenghoe Hakbo*, and *Daehanhunghakbo* Journals
Wang, Chen

The concept of sovereignty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West via the Qing Dynasty and Japan starting from 1870-80s, through such channels as W.A.P. Martin's translations of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Manguk kongpop) and Bluntschli's "International Law" (Kongpop hoetong). While the Western concept of sovereignty was being introduced and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ople's understanding of it varied depending on class and time period.

During the reign of the Japanese imperialis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 intellectual class came from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who had studied in Japan. Therefore, the first Japanese-educated Korean students'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has had an influence on the spread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should not be overlooked. When it comes to such studies of sovereignty,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available with regard to the academic activities or journals of the Korean students who had studied in Japan. That is why this paper examines the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of the Korean students who had studied in Japan from 1905 to 1910, taking the *Taegukhakbo*, *DaehanHakhoi Wolbo*, *Daehanyuhaksaenghoe Hakbo*, and *Daehanhunghakbo* journals as the objects of research.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rom the analysis. First, among the journal articles that related to the subject of sovereignty, there are many discussions that introduce sovereignty as the constituent element of a state. Second,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interpret sovereign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ird, a phenomenon where the terms of "sovereignty", "sovereign", and "imperium" are confused may be seen. Fourth, the internal 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differs from the modern concept of sovereignty. According to the *Taegukhakbo*, sovereignty on the Korean Peninsula represents

the highest power in the country, which is not subject to external interference; sovereignty lies in the hands of the monarch, and the exercise of sovereignty depends on the monarch; hence, as a system of government it is an absolute monarchy.

